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건설산업기본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방해·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
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10. 26. 2006고합709,2006고합842(병합)]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고형곤

【변 호 인】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 변호사 이철우외 5인

【주문】

]

피고인 1, 2, 5를 각 징역 2년 6월에, 피고인 3을 징역 2년에, 피고인 4 주식회사를 벌금 20,000,000원에 각 처한다.

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28일을 피고인 1에 대하여, 133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, 71일을 피고인 3에 대하여, 3일을 피고인 5에 대하여 위 각 형에 산입한다.

다만,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1, 2, 5에 대하여는 각 4년간, 피고인 3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 1, 2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의 점은 각 무죄.

[이유]

1

[이유]

[이유]

]

【이유】

]

1

[이유]

[이유]

]

【이유】

1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